#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70

발의연월일: 2021. 3. 9.

발 의 자:최혜영・이은주・김홍걸

이규민・김승원・양경숙

강득구 · 박홍근 · 윤건영

박성준 • 윤관석 • 안규백

박영순 · 윤미향 · 이광재

윤준병 · 황운하 · 김회재

오영환 의원(19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을 정하면서, 그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로하여금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, 구급차등의 운전자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응급장비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고, 응급장비를 갖춘 시설의 소유자 등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대상이 아니 어서, 응급장비 점검 의무 및 효과적인 응급장비 사용의 실효성이 떨 어진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응급장비를 갖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응급장

비 점검결과를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,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자로 추가함으로써, 응급장비 관리를 철 저히 하고 그 사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제1항 후단·제1호의2 및 제47조의2제3항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1의2.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

제47조의2제3항 중 "점검하여야 한다"를 "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 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62조제1항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 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3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1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
- 3의5.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응급장비 점검결과를 통보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응급장비 점검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) 제47조의2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과태료에 관한 적용례) 제62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	제14조(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
교육)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	교육) ①
시・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	
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	
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	
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	
다. <u>&lt;후단 신설&gt;</u>	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
	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
	교육을 받아야 한다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1의2.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
	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
	<u>·점유자 또는 관리자</u>
2. ~ 15. (생 략)	2. ~ 1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	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
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 ①・	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 ①・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	3
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	
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	<u>점검하고 그 결과</u>
<u>다</u> .	를 관할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

④ (생략)

제6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제62조(과태료) ① -----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신 설>

1. (생략) 1의2. (생략) 2. ~ 3의4. (생략) <신 설>

4. ~ 6. (생략)

② (생략)

계	통보	하여	95	하다
/ II	7	OI 97	~ F	Y' 4.

④ (현행과 같음)

1. 제1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 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

1의2. (현행 제1호와 같음)

1의3. (현행 제1호의2와 같음)

2. ~ 3의4. (현행과 같음)

3의5.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 여 응급장비 점검결과를 통 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

4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